

「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
(장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센터 조성)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3월 3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3월 4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3월 13일

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선산출장소장 박 은 희

나. 제안이유

- 장천면은 종합복지센터 외에는 생활복지·문화 인프라가 전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
- 주민들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,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출 및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
- 통합형 생활SOC가 부족하여 복지·문화·여가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함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- 위 치 :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942-90, 942-91번지
- 대 상 : 건물 증축(증축 627㎡)
- 기준가격 : 3,162백만원(공사비 2,988, 설계비 144, 감리비 30)
- 사업기간 : 2024년 ~ 2027년
- 주요시설 : 목욕탕, 휴게라운지, 건강테라피존 등
-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 - 농촌협약 공모선정 : '23. 6월
 - 농촌협약 체결(농림축산식품부↔구미시) : '24. 4월
 -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: '24. 10월
 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광역계획지원단(경상북도) 협의: '25. 9월
 - 기본계획 승인 : '25. 10월
 -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발주 : '26. 1월
 -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: '26. 6월
 - 공사 착공 및 준공 : '26. 8월 ~ '27. 8월
- 근거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 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1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1건	627	3,162
	1.기타 취득	1건	627	3,162
	건물			

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매각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량(m ²)					
총계			627	3,162				
취득	건물	장천면 상장리 942-90번지, 942-91번지	627	3,162	2027년	한마음센 터 조성	구미시	증축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관리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생활 복지 및 문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천면 지역에 ‘한마음센터’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설계 단계에서 ‘사용자 중심 공간 구성’을 위한 의견 수렴 시 주요 시설 배치 과정에서, 주민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시설 확충이 아닌, 주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.
- 아울러, 장천면이 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임을 감안할 때, 향후 유동 인구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히 현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에 그칠 것이 아니라, 미래 유입 인구의 수용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을 갖춘 고품질 생활 인프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